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57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이헌승·서일준·조경태

김정재 • 윤상현 • 김기현

송석준 · 정성국 · 박덕흠

강선영 · 성일종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이하 "스팸"이라 함)를 전송·게 시하려는 자와 그 전송의 매개가 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과태료 등 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한 스팸 전송(이하 "불법스팸"이라 함)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불법스팸 전송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에 비해 전송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불법스팸 전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스팸을 전송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를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며, 불법스팸 전송 관련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제50조의10 신설 및 제75조의2 전단).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9(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3 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①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확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50조의10(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 고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고성정보전 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2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u><신 설></u>	재 정 안 제50조의9(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 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 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 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 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 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
	금을 징수한다.

-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 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 하지 못한다.
- ①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 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 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

<신 설>

제75조의2(몰수·추징) <u>제72조제1</u> <u>항제2호</u> 및 제73조제7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 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 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0조의10(광고성정보전송협의 체의 구성·운영) ① 방송통신 위원회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공유하고 관련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고성정보전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성정보전 송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75조의2(몰수·추징) <u>제72조제1</u>
<u>항제2호 • 제2호의2</u>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